



교육감 규정

번호: C-37

제목: 커뮤니티 수퍼인텐던트 선발

항목: 인사

발행: 2019년 8월 1일

변경 사항 개요

본 규정은 2018년 9월 21일자 교육감 규정 C-37을 대체합니다.

변경 내용:

- 협의 과정에 최종 후보 또는 임명 예정 후보와 만날 기회를 포함하고 임명 전에 교육감에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구한 개정 뉴욕주 법에 맞게 후보 면접 후 학부모 및 교직원과의 협의 절차가 갱신 되었습니다.
- 본 규정 마지막 부분의 연락처 정보가 갱신되었습니다.
- 각주에 있었던 정보를 본문으로 옮겨 본 문서 내용을 더욱 명확히 하였습니다.

요약

뉴욕시 교육법은 뉴욕시 교육감이 커뮤니티 수퍼인텐던트를 임명하도록 허가한다. 본 규정은 커뮤니티 학군 수퍼인텐던트의 교육, 경영, 행정적 자격요건 및 실적 기록 범주를 규정한다. 또한 커뮤니티 수퍼인텐던트 임명 절차를 규정한다.

I. 자격 요건

커뮤니티 수퍼인텐던트는 반드시 뉴욕주 학군 리더 자격 또는 주 교육부가 발급한 동등한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후보는 반드시 교육, 경영, 행정적 자격요건 및 실적 기록 범주를 충족해야 한다.

A. 교육적 자격 요건

- 교육감 규정 C-30에 규정된 최소 7년의 성공적인 교육직 경력과 함께 최소 3년간 공립 또는 사립학교 교장으로 성공적인 경력. 후보가 2014년 8월 22일 이전 DOE 수퍼인텐던트로 재직한 경우는 예외;
- 모든 영어 습득 단계의 영어학습학생, 특수교육 학생 및 영재 학생의 학습 필요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폭넓은 경험을 가진 존경 받고 우수한 스킬을 보유한 학습 리더라는 증거 제시;
- 교육수준 검토 및/또는 학생 진척 지표로 측정된 모든 학생 및 리더십 개발 성과의 성공적인 향상을 증명하는 기록;
- 향상된 학생 성취를 위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의사 결정, 차별화된 교육, 지속적인 성인 교육에 대한 헌신을 보임;
- 학습 핵심에 집중: 콘텐츠 교차점, 교사 및 학생;
- 예술 교육에 헌신하고 학생의 재능 개발; 및
- 효과적인 이론 및 관행을 적용에 대한 세심한 이해 및 능력;
 - ◆ 학생의 학습, 성장 및 개발;
 - ◆ 모든 구성원의 전문 개발;
 - ◆ 교실 수업의 일부로 학습 테크놀로지 활용;
 - ◆ 차별화된 교육 전략, 특히 니즈가 많은 학생 대상;
 - ◆ 지속적인 학교 개선의 기반으로 발달 평가;
 - ◆ 증거를 기초로 한 평가: 교직원 성과 반추 및 집중 지원

B. 경영 및 행정적 자격요건

1. 학부모 및 학교 커뮤니티를 학생 학습 향상에 대한 결정에 포함시키는 헌신 및

능력 증명;

2. 학교 커뮤니티 일원을 모두 참여시키는 능력 제시; 및
3. 교사 및 학교 리더 개발 경험.

C. 개인 전문성 자격요건

증명:

- 전문 사안에 대한 높은 수준의 윤리, 정직, 진정성;
- 교직원 및 학교 커뮤니티와 협력;
- 우수한 조직 능력과 구두 및 문서로 효율적으로 의사 소통 능력;
- 교육 리더십 및 학생, 학부모, 교직원, 학교 커뮤니티에 동기 부여 능력;
- 분쟁 해결, 논쟁적인 상황 해결 및 공통 목표를 위해 모든 구성원 통합 능력;
- 교장들과 파트너로서 학습 리더십 역량을 개발하고 가속화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에 차별화된 지원 제공;
-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를 위한 중앙 부서의 학습 및 운영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장 지원;
- 커뮤니티 이해 관계자와 소통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능력;
- 커뮤니티가 쉽게 접근하고 소통할 수 있으며 커뮤니티 행사에 참여.

D. 실적 기록 범주

모든 커뮤니티 수퍼인텐던트 지원자는 현재 및 과거의 역할에서 교육적, 경영적, 행정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지속적인 진척을 보였음을 증명해야 한다. 학생 성취 성장 패턴의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II. 지원 절차

커뮤니티 수퍼인텐던트 공석은 교육청 웹사이트에 공고된다. 지원자는 반드시 공고에 대한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절차의 일부로 지원자는 지원서에 명시된 적절한 주제에 대한 에세이 및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III. 후보 평가

교육감 지명인이 지원서를 검토하고 웹사이트 공고에 답한 지원자 중 자격을 갖춘 후보를 면접한다.

IV. 학부모 및 교직원과 협의

인터뷰가 끝나면 교육감 지명인은 커뮤니티 수퍼인텐던트 최종 후보 또는 커뮤니티

수퍼인텐던트 후보를 소개하고 학군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 회장 위원회 및 UFT, CSA, DC 37 대표와 협의하도록 한다. 이러한 협의는 위에 명시된 위원회 및 직원 대표가 제안된 최종 후보와 만나 대화하고, 교육감 지명인에게 최종 후보에 관한 피드백을 제시할 기회를 포함해야 한다. 교육감 지명인은 교육감에게 커뮤니티 수퍼인텐던트 후보를 추천하기 전에 이러한 피드백을 참고해야 한다.

V. 선발 및 임명

섹션 IV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위원회 및 직원 대표들의 피드백을 고려하고 협의를 거친 후, 교육감 지명인은 커뮤니티 수퍼인텐던트 후보를 교육감에게 추천한다. 교육감이 추천을 수락하면 해당 후보를 교육장으로 임명하며 커뮤니티 교육위원회, 회장 위원회 및 위에 명시된 노조 대표에게 임명이 통보되도록 한다. 교육감이 추천을 거부하면 교육감 지명인은 반드시 섹션 III 및 IV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른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VI. 임시 수퍼인텐던트 지명

각 커뮤니티 학군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개인이 수퍼인텐던트로 항상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정식 임명된 수퍼인텐던트가 없는 경우 (사퇴, 은퇴 등) 교육감은 임시 수퍼인텐던트를 지명한다. 교육감은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 회장 위원회 및 UFT, CSA, DC 37 대표에게 지명을 통보해야 한다. 임시 수퍼인텐던트는 반드시 뉴욕주 인증 요건인 뉴욕주 학군리더 자격 소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VII. 예외 조항

커뮤니티 수퍼인텐던트는 교육감 소관이다. 따라서 사전 통보나 특정 사유 없이 해직될 수 있으며 사전 또는 사후 해직 공청회를 할 수 없다. 커뮤니티 수퍼인텐던트는 임명 조건으로 권리 포기를 인지하는 교육법이 제시하는 권리 포기서에 서명해야 한다.

VIII. 감독

교육감 지명인은 본 규정 이행을 감독한다.

IX. 문의처

본 규정 관련 문의:

Office of the First Deputy Chancellor(제1 부교육감실)

N.Y.C. 교육청

52 Chambers Street - Room 208

New York, NY 10007

전화: 212-374-6815

팩스: 212-374-5901